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프라’ 를 ‘기반시설’ 로 용어 변경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7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3조제2항제8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4. 3.

다. 회 부 일: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Ⅲ. 검토의견

1.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3조제2항제8호)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조제2항제8호).
- 조문에 포함된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인프라</u> 구축에 관한 사항	8. <u>기반시설</u>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는 ①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제1호), ② 창작활동 활성화(제2호), ③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제3호), ④ 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4호), ⑤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제5호), ⑥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제6호), ⑦ 전문인력의 양성(제7호), ⑧ 인프라 구축(제8호), ⑨ 국제협력(제9호), ⑩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제10호), ⑪ 위법하게 제작·유통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1.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 감시활동의 지원(제11호) 및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

- 개정안은 제3조제2항제8호의 ‘인프라’라는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언어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별첨 [참고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공언어 순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용어가 변경되어도 법령 체계 및 해석상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²⁾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2025.4.3.), 의안번호 제2209577호

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2025.4.3.), 의안번호 제2209579호

문 의 처
02)6788-5384

법률명	조문 내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 을 확충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